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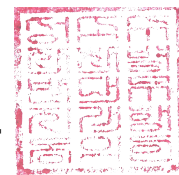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1대 국회에 묻는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질의서

1. 귀 당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성소수자 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이하 '무지개행동')은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해 활동하는 총 40개 단체가 함께하는 상설연대체로, 지난 2008년 결성된 이래 차별과 혐오에 반대하고 성소수자 인권 증진을 위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습니다.
3. 무지개행동은 4. 15. 총선을 맞아 성소수자 인권증진을 위하여 21대 국회에서 주력할 10개의 성소수자 인권 과제를 선정하였습니다. 이에 시급한 성소수자 인권과제에 관하여 귀 정당에 질의하고 답변을 받아 유권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본 질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귀 정당의 답변은 유권자들의 선택을 돕기 위해 언론과 온라인에 공개됩니다.
4. 자세한 내용은 3 내지 15쪽의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세부내용을 참조해주시고, 2쪽의 답변서를 작성하여 회신처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회신 마감일자 : 2020년 3월 13일(금) 오후 6시까지
- 회신처 : (메일) lgbtqact@gmail.com 또는 (팩스) 02-744-7916

2020. 3. 4.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 노동당 성정치위원회, 녹색당 소수자인권특별위원회, 다양성을 향한 지속가능한 움직임 다움, 대구퀴어문화축제, 대전 성소수자 인권모임 '솔롱고스', 대학·청년 성소수자모임연대 QUV, 대한불교 조계종 사회노동위원회, 레주파, 무지개예수, 무지개인권연대, 민중당 인권위원회, 부산 성소수자 인권모임 QIP, 부산퀴어문화축제 기획단, 30대 이상 레즈비언 친목모임 그루터기, 서울인권영화제, 서울퀴어문화축제조직위원회, 성공회 용산나눔의집(사회적소수자 생활인권센터), 성별이분법에 저항하는 사람들의 모임 '여행자', 성소수자부모모임, 성소수자알권리보장지원 노스웨스트 호, 성적소수문화인권연대 연분홍치마, 성적지향성별정체성 법정책연구회, (사)신나는센터, 언니네트워킹, 이화 성소수자인권운동모임 변태소녀하늘을날다, 전라북도 성소수자 모임 열린문, 정의당 성소수자위원회,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청소년성소수자위기지원센터 핑통, 청소년 트랜스젠더 인권모임 툴립연대(준), 트랜스젠더 인권단체 조각보, 트랜스해방전선,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한국레즈비언상담소,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국청소년청년감염인커뮤니티알,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 HIV/AIDS 인권연대 나누리+ (총 40개 단체 및 모임)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

21대 국회에 묻는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질의서

- 정당명 : ○ 부서 :
○ 담당자 : ○ 연락처 :

제21대 국회에 요구하는 성소수자 인권 과제		예	아니오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를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2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법제도 마련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3	합의에 기반한 동성 간 성관계를 처벌하는 「균형법」 92조의6 폐지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4	동성결혼 법제화 및 성소수자 가족구성권보장을 위한 법제도 마련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5	「트랜스젠더 인권법」 제정을 비롯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법제도 마련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6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를 포함해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개정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7	학교성교육표준을 폐지하고 다양한 성적 지향·성별정체성을 존중하는 초·중·고 교육과정 마련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8	성소수자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침해하는 국가기관의 행정을 개선하고 성소수자혐오에 의한 집회의 자유 침해방지를 위한 제도개선에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9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에 대한 국회 등의 공공건물을 대관할 수 없도록 국회 등 공공건물에 대한 대관 규정을 정비하는데 찬성하십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10	헌법에 명시된 정교분리의 원칙에 따라 의정활동에 임하시겠습니까?	<input type="checkbox"/>	<input type="checkbox"/>

※ 답변은 예/아니오 공란에 체크해주시고 기타 의견이나 보충의견이 있으신 경우 별도로 적어주시면 참조하겠습니다. 기간까지 미회신 시에는 답변을 거부한 것으로 판단하겠습니다.

10대 성소수자 인권 과제 세부 내용

성소수자 인권과제	1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금지법을 포함한 「차별금지법」 제정
--------------	----------	--------------------------------------

1) 현황 및 문제점

- 한국 사회는 2007년 이후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이어져 왔고 17, 18, 19대에 걸쳐 법안 발의도 수차례 있었으나 10년이 넘게 차별금지법을 제정하지 못한 상황임. 차별금지법은 성별을 비롯해 출신지역, 장애, 병력, 노동 형태, 종교, 경제적 상황, 생애주기, 가족 형태, 성적 지향과 성별 정체성 등이 교차하며 복합적으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을 규제·개선하기 위한 법임에도, 극우개신교 등 반성소수자세력들의 반발과 정부와 국회의 의지부족으로 제정되지 못하고 있음.
- 10년 넘게 차별금지법 제정이 이루어지는 사이 여성을 비롯한 이주민, 난민, 성소수자, 장애인 등 소수자들에 대한 차별과 혐오는 더욱 심각해졌음. 특히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일상적인 차별과 혐오를 겪고 있음.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의하면, 응답자의 44.8%가 직장 내에서 성적지향을 이유로 한 차별을 경험했고, 64.0%가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차별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남.¹⁾ 재화·용역, 공공서비스 이용에 있어서의 차별도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성소수자들은 한국 사회에서 혐오표현에 가장 많이 노출되며,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도 큰 상황임.²⁾
- 2007년 이후 한국정부는 유엔을 비롯한 국제사회로부터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이 명시된 포괄적인 차별금지법 제정을 지속적으로 권고 받아 왔음. 최근 5년의 권고들은 다음과 같음.

최근 한국 정부에 대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상황

- 2015년 유엔 자유권위원회 한국정부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CCPR/C/KOR/CO/4)
- 2017년 유엔 사회권위원회 한국정부 4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E/C.12/KOR/4)
- 2017년 국가별 인권상황 정기검토에서 30개 국가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
- 2018년 유엔 여성차별철폐위원회 한국정부 8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CEDAW/C/KOR/CO/8)
- 2019년 유엔 아동권리위원회 한국정부 5-6차 보고서에 대한 최종권고(CRC/C/KOR/5-6)

- 현재 반성소수자단체들은 차별금지법을 비롯해 인권과 반차별에 관한 모든 법들의 제정을 막고 있음. 이는 역설적으로 차별금지법 제정을 통해 이러한 혐오와 차별의 흐름을 끊어야 할 필요성을 보여줌.

2) 정책과제

- 성적지향·성별정체성을 차별금지 사유로 명시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 차별금지법의 내용으로 차별에 대한 구제수단과 더불어 국가 및 지자체의 평등정책 마련 의무와 평등, 반차별 교육 의무를 명시

1)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수행(2014),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2) “혐오표현 실태조사 및 규제방안 연구”(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2016)에 따르면 성소수자의 94.6퍼센트가 온라인에서 자신의 정체성에 대한 혐오표현을 경험한 바 있고, 57.8퍼센트가 혐오표현의 영향으로 정신적 어려움을 겪었다고 답했다.

1) 현황 및 문제점

- 성적지향, 성별정체성에 대한 무지와 편견은 성소수자를 향한 물리적인 폭력, 증오범죄로 이어지기도 함. 특히 최근 몇 년간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성소수자를 향한 조직적인 혐오의 표출이 심화되면서 혐오표현을 넘어 성소수자 단체가 게시한 현수막을 훼손하거나 성소수자들에게 직접적인 폭력과 협박 등을 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요구됨. 구체적인 사례들은 아래와 같음.
- 2016년에는 대학 내 성소수자 동아리들이 성소수자 신입생을 환영하기 위하여 게시한 현수막들이 훼손되는 일들이 잇달아 벌어짐. 서울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QIS가 “관악에 오신 성소수자, 비성소수자 신입생 여러분 모두 환영합니다” 라는 문구로 게시한 현수막이 칼로 찢겨져 훼손되는 일이 있었고, 성균관대학교 성소수자 동아리 ‘퀴어홀릭’이 게시한 현수막도 줄이 끊어져 철거되었음. 서강대학교 퀴어모임&서강퀴어자치연대 ‘춤추는 Q’의 현수막도 훼손된 채 인근 쓰레기통에서 발견되었는데 범인이 해당학교 교수인 것으로 밝혀짐.³⁾ 대학 동아리 외에도 2017년 “도시계획에 성소수자 지우지 말라”는 내용으로 종로에 게시된 현수막에서 ‘성’자만 도려내지는 일도 발생하였음.⁴⁾
- 2018년 9월 8일 열린 인천퀴어문화축에서는 반동성애 세력 등의 집단적인 행사 방해 및 폭력 등 증오범죄가 발생함. 축제를 방해하기 위해 모인 반성소수자단체들에 의해 축제 기획단 및 참가자들이 욕설, 협박, 폭행, 소지품 강탈 등의 갖은 피해를 겪어야 했음. 고려대 보건과학대학 김승섭 교수(보건정책관리학과) 연구팀은 당일 현장에 있었던 이들의 경험을 온라인으로 조사했는데, 총 응답자수 305명 중 피해사례 가운데 ‘비하 발언’이 298명(98%), ‘길 가로막힘’(290명, 95%), 욕설·조롱·비하(262명, 86%) 등으로 나타남. 축제 참가 이후 심리상태에 대한 질문에 우울증상에 215명(70%), 급성스트레스장애 257명(84%), 외상후스트레스 장애 예측 202명 (66%) 으로 나타남. 기획단은 반성소수자단체의 이러한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했으나 검정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림.
- 2020년 2월 23일에는 서울 마포구에 위치한 퀴어 페미니즘 책방 ‘꿀’ 건물 유리창에 누군가가 흰색으로 래커칠을 하고 “동성애는 죄입니다”와 같은 혐오표현을 적은 일이 발생해서, 경찰이 수사에 들어갔음.⁵⁾

2) 정책과제

- 「증오범죄 통계법」을 제정하여 성적지향, 성별정체성 등에 따른 적대나 편견에 의해 이루어진 증오범죄의 원인과 실태 등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시스템 구축
- 형사/사법기관의 성소수자 인권교육 강화 및 차별과 폭력을 신고할 수 있는 절차와 홍보 정책 마련

3) 고함20(2016. 4. 6.), “[뜯고 찢고 뿌리고 즐기고] 성소수자 동아리 현수막 훼손 사건 총정리”
www.goham20.com/49767/

4) 한겨레(2017. 10. 16.), "도시계획에 성소수자 지우지 말라"는 펼침막마저 훼손

5) 경향신문(2020. 2. 26.), "[단독]퀴어 페미니즘 책방에 '동성애 혐오' 래커칠...경찰 수사"

1) 현황 및 문제점

- 「군형법」 제92조의6 추행죄는 '군인 또는 준군인'에 대하여 항문성교나 그 밖의 추행을 하는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조항임. 이는 동성애에 대한 유일한 형사처벌 조항으로 강제력의 행사 없이 행위자 상호간의 합의에 의한 동성 간 성행위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군인의 인간의 존엄, 성적 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 왔음.
- 특히 이 조항은 동성 간 성행위를 이성 간 행위와는 달리 대우한다는 점에서 동성애에 대한 차별적인 법 규정임. 군대 내 이성 간의 합의된 성행위 중 군기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행위는 군인사법상의 징계처분, 전역조치 등으로 규제하고 있는 것에 비해 동성 간 성행위는 형사처벌이 이루어지고 있음. 결과적으로 이 조항은 존재 자체로 동성애를 비정상적인 행위로 낙인찍음으로써 동성애자 군인은 물론 사회 전반의 성소수자에 대한 낙인을 야기하는 문제가 있음.
- 이 조항을 통해 군대 내 성폭력을 방지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으나, 군대 내 성폭력은 군형법에는 이미 강간, 강제추행을 처벌하는 조항이 있고 위계·위력에 의한 성폭행의 경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으로 처벌이 가능함. 그럼에도 「군형법」 제92조의6은 합의에 의한 강제성과 공연성이 없는 성적 접촉을 처벌하는 법조항이기 때문에 문제이고, 또한 오히려 이 조항으로 인해 강제추행죄로 처벌될 행위가 형량이 더 낮은 추행죄로 처벌되는 문제도 발생하고 있음.
- 이에 대해 국내 및 국제인권기구들에서도 지속적으로 폐지권고가 이루어짐. 개인의 성적자기결정권, 사생활의 자유,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위헌 의견이 있으며, 2015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 2017년 5월 유엔 고문방지위원회, 10월 유엔 사회권 위원회, 11월 국가별인권정례검토 내 총 6개국 등에서 폐지권고 이어짐.
- 현재 「군형법」 제92조의6은 2017년 2월 인천지방법원에서 위헌제청이 이루어짐에 따라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에 있음. 위 위헌제청 외에도 3차례의 헌법소원들이 있었고 2020년 2월 수원지방법원에서도 위헌제청이 이루어짐.⁶⁾ 2018년 2월에는 서울북부지방법원에서 이 법 위반으로 기소된 사건에 대해 최초로 무죄판결이 나왔음.
- 제19대 국회(진선미 의원 대표발의), 제20대 국회(김종대 의원 대표발의)에서 각각 군형법 제92조의6 폐지안이 발의되었으나 소위에서 제대로 논의되지 못함.

2) 정책과제

- 「군형법」 제92조의 6 폐지

6) 경향신문(2020. 2. 20.), “동성애 처벌 군형법 92조의6…“기본권 침해” 또 위헌 심판대“

1) 현황 및 문제점

- 혼인제도는 가족제도의 기초로서 의료, 금융, 복지, 주택 등 사회복지 제도가 혼인을 중심으로 설계돼 있음. 이에 따라 제도적으로 인정되지 않는 배우자 관계에 대한 불평등이 발생함. 특히 동성 커플은 성별이 같다는 이유로 모든 혼인제도에서 배제되어 각종 사회적인 차별을 겪고 있음.
- 동성결혼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지 못함으로써 동성 커플은 이성 커플과 달리 법적 지위, 사회보장 및 세제혜택, 주거, 노동조건 등에서 배제와 차별을 겪을 뿐만 아니라 배우자가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비혼으로 간주되어 차별을 겪기도 함. 특히 수술 동의 등 의료 과정에서 가족으로서 권리 행사와 국민건강보험 부양, 피부양 관계의 불인정과 국민연금의 수혜자 지정이 불가능한 점은 시급한 과제임. 2018년 성소수자 가족구성권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가 실시한 <동성 동거 커플 차별실태조사>에 따르면, 동성 커플들은 주택, 의료, 직장, 사회보장 등 전 영역에서 차별을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남.⁷⁾
- 주거·사회보험·연금 등 한국의 주된 복지정책을 이루는 제도는 모두 혈연·혼인 관계에 한해 적용되고 있어, 혈연·혼인관계로 구성되지 않은 다양한 형태의 가족·가구는 표준화된 가족 복지의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도 문제로 지적됨. 따라서 동성결혼 법제화와 더불어 이성·동성 커플 및 2인 이상의 비혈연공동체 등 혈연·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공동생활관계를 등록하고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법률이 필요함.
- 이미 미국, 캐나다, 스페인, 프랑스를 비롯한 세계 28개 국가와 지역에서 동성결혼을 인정하고 있음. 아시아에서는 2019년 대만 입법원이 동성결혼에 관한 특별법을 통과시켰고, 일본의 경우 국가 차원의 법률은 없으나 각 지자체에서 조례 또는 규칙에 의해 동성커플의 권리를 보장하고 있음.
- 한편 혼인관계에서 배제됨으로써 발생하는 다양한 차별의 문제는 개별적인 법률의 정비를 통해서도 해결 가능함. 가령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경우 법률혼만이 아닌 사실혼의 경우에도 권리를 보장해주고 있음. 이러한 개별적인 법제도의 영역에서 반드시 이성간의 법률혼만이 아닌 다양한 관계들을 보장해주기 위한 방안들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2) 정책과제

- 성별에 관계없이 혼인의 자유를 누릴 수 있도록 동성결혼 법제화
- 동성 부부에 대한 제도적, 사회적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상속제도, 연금제도, 사회복지 및 조세, 의료 관련 법제도 정비
- 혈연·혼인 관계에 있지 않은 동거가구의 현황을 파악하고 복지제도의 대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생활동반자법」 제정

7) 성소수자가족구성권보장을위한네트워크(2019), “동거동성커플 주거·의료·직장·연금 등 차별실태조사”

1) 현황 및 문제점

- 올해 초 트랜스젠더 군인 변희수 하사와 숙명여대 합격생 A씨를 비롯하여 다양한 트랜스젠더들이 목소리를 들어내고 자신들의 삶을 이야기했음. 그와 더불어서 트랜스젠더들이 제도적인 차별과 일상의 혐오 속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있음이 드러나기도 했음.
- 대표적으로 성별을 1과 2, 3과 4, 두 가지로만 구분하는 주민등록제도로 인해 많은 트랜스젠더들이 고용, 행정서비스, 재화용역 이용에서 차별을 경험함. 2014년 국가인권위원회 연구용역 <성적지향·성별정체성에 따른 차별실태조사>에 의하면 트랜스젠더의 약 60%가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관련된 업무를 포기한다고 응답하였음.⁸⁾ 이와 관련 2019년 12월 행정안전부는 주민번호 뒷자리를 임의번호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으나 이 역시 성별표시는 그대로 남겨두는 방식임.⁹⁾
- 법적 성별정정은 신분제도상 성별표시와 성별정체성의 불일치를 해결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임. 그러나 현재 성별정정은 법률이 아닌 대법원 판례와 가족관계등록예규 <성전환자의 성별정정허가 신청 사건 등 사무처리 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고 있음. 이러한 판례와 예규는 실질적으로 성별정정에 있어 아래와 같이 엄격한 요건을 두어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침해해 왔음.

1) 외부성기 성형수술 2) 생식능력제거 3) 연령제한 4) 미성년 자녀가 없을 것을 요구 5) 혼인중이 아닐 것을 요구 6) 범죄 또는 탈법 행위의 의도나 목적이 없을 것을 요구

- 특히 이 중 외부성기 성형수술 요구의 경우 트랜스젠더의 신체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고가의 수술비용으로 경제적인 부담도 주고 있음. 그럼에도 현재 트랜스젠더의 트랜지션 관련 의료는 모두 건강보험 비급여 항목으로 되어 있어 모든 비용을 개인이 감당해야 함. 또한 급여 체계에 포함되지 않음으로써 실제로 의료적 조치가 가능한 병원들이 얼마 없어 의료접근권의 침해도 발생함.
- 이와 관련 성소수자 운동에서는 그간 「성별변경 특별법」의 제정을 요구해 왔고, 2015년 유엔 자유권 위원회에서도 성별정정을 법적으로 인정받기 위한 과도한 제한을 완화할 것을 권고했음 (CCPR/C/KOR/CO/4).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트랜스젠더가 겪는 인권침해는 성별정정만이 아니고 주민등록제도, 건강보험 및 고용 및 일상에서의 차별 등 다양한 영역에 걸쳐 있음. 그렇기에 성별정정만이 아닌 트랜스젠더의 인권을 전반적으로 보장하는 소위 「트랜스젠더 인권법」의 제정이 요구됨.¹⁰⁾

8)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수행(2014), 앞 보고서

9)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디지털정보위원회 등(2019. 12. 19.), “[공동논평] 행안부는 반쪽짜리 주민번호 개편안 전면 재검토하라”

10) 해외에서도 이러한 트랜스젠더 인권 관련 법률 제정이 이루어지고 있음. 몰타의 경우 2015년 「성별정체성, 성별표현 및 성특징 법」을 제정했고, 파키스탄도 2018년 트랜스젠더(권리보호)법을 제정하였음.

2) 정책과제

- 트랜스젠더의 전반적인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가칭 「트랜스젠더 인권법」을 제정
- 법안의 내용으로 자기결정권에 기반해 인권침해적 요건을 두지 않은 성별정정 절차, 트랜지션 관련 의료적 조치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 트랜스젠더 아동청소년의 권리보호, 고용 및 일상 영역 등에서 차별금지 내용을 포함.
- 「주민등록법」을 개정하여 주민등록번호를 전부 임의번호화하고, 관련 법제도를 정비하여 불필요하게 성별정보를 수집하거나 표시하지 않도록 함.

1) 현황 및 문제점

-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이하 HIV)와 HIV 감염으로 인한 면역력 저하로 나타나는 후천성면역결핍증(Acquired Immune Deficiency Syndrome, AIDS, 이하 AIDS)은 고강도항레트로바이러스요법의 개발과 노출 전 예방요법(PrEP), 노출 후 예방요법(PEP)과 같은 다양한 치료, 예방법으로 인해 관리 가능한 만성질환이 되었음. 그럼에도 아직까지 HIV 감염인, AIDS 환자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이 부족하여 차별과 혐오가 발생하고 있음.
- 이와 관련해 만들어진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은 그 이름과는 달리 ‘HIV 감염인 인권보장이 곧 예방’이라는 핵심과는 동떨어진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음. 이 법은 1987년 HIV가 알려졌을 당시의 공포와 통제에 기반하여 제정되었고 2008년 한차례 개정을 통해서 HIV 감염인에 대한 프라이버시 침해 금지, 사용자의 차별금지 등이 포함되었으나 여전히 반인권적인 요소가 상존하고 있음.¹¹⁾ 대표적으로 취업 제한 규정과 강제 검사,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등의 폐지와 실질적인 인권증진, 복지서비스에 대한 근거조항 마련이 필요.
- 특히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 조항은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위험적인 조항임. 이 조항은 ‘혈액 또는 체액을 통한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는데 구체적으로 무엇이 금지되는 행위인지가 불명확함. 또한 결핵과 같이 전파력이 높은 질병에 대해서도 전파매개행위금지가 없음에도 오직 HIV/AIDS에 대해서만 전파매개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처벌한다는 점에서 평등원칙에도 위배됨. 실무적으로도 이법에 의해 처벌되는 사례는 주로 ‘콘돔을 착용하지 않은 성관계’인데 이는 의학·과학적 사실과도 맞지 않음. 최신의 연구들은 HIV 감염인이 지속적으로 항레트로바이러스제를 복용하여 혈액 속에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는 바이러스 미검출 상태일 경우, 성적 접촉에 의한 감염도 일어나지 않는다는 ‘미검출(Undetectable) = 감염불가(Untransmittable)’ (이하 U=U)를 확인하고 있고.¹²⁾ 유엔에이즈 및 각국의 기관, 단체들에서도 U=U 캠페인을 적극적으로 지지하고 있음. 그럼에도 검찰과 법원은 아직까지 낡은 사실에 근거해 기소, 처벌을 함으로써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심화시키고 있음. 게다가 역설적으로 본인이 HIV 감염인인지 모르면 이법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음. 결과적으로 이법은 HIV 조기검진을 가로막고 HIV 감염인에 대한 낙인을 강화함으로써 예방 및 치료에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에서 폐지되어야 마땅함. 이러한 취지에서 2019년 11월에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이 조항에 대해 직권으로 위헌심판제청을 제기했음.
- 한편 HIV 감염인이 의료기관에서 겪는 차별도 심각한 수준임. 2016년 국가인권위원회의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에 따르면, HIV 감염인의 79%가 의료기관에서 차별이 ‘매우 많다’ 혹은 ‘있는 편이다’라고 인식하고 있음.¹³⁾ 또한 현재 장기요양이 필요한 에이즈 환자가 갈 수 있는 요양병원이 전무한 실정이며,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져있지 않고, 사회적 편견과 혐오로 인해 입원을 거부당하고 있는 실정임.

11) 국가인권위원회(2015), “제3기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 권고안 수립을 위한 연구”
 12) RISK OF SEXUAL TRANSMISSION OF HIV FROM A PERSON LIVING WITH HIV WHO HAS AN UNDETECTABLE VIRAL LOAD - Messaging Primer & Consensus Statement (Endorsements Updated: May 5, 2019. Issued: July 21, 2016) <https://www.preventionaccess.org/consensus>
 13) 장애여성공감 수행(2016), “감염인(HIV/AIDS) 의료차별 실태조사”

2) 정책과제

- HIV 감염인을 범죄화하는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 제19조 전파매개행위금지조항 폐지
- 현행 후천성면역결핍증예방법을 전면 개정하여 HIV감염인의 인권을 증진하고 차별을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포함하도록 함
- HIV 감염인 의료차별에 대해 장애인차별금지법으로 규율, 실효성 있는 장기요양 정책 마련

1) 현황 및 문제점

- 2015년 교육부가 발표한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이하 성교육표준안)은 청소년의 성적 권리와 다양성을 원천적으로 배제하고 있음. 표준안엔 '여자는 무드에 약하고, 남자는 누드에 약하다', '성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선 이성 친구와 단둘이 있는 상황을 만들지 않는다' 등 시대착오적이고 성별 고정관념을 부추기는 내용이 담겨 있음. 더불어 교육 지침을 통해 '동성애에 대한 지도는 합법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다양한 성적 지향 용어 사용 금지 및 삭제' 등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이러한 표준안은 다양한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에 대한 차별을 예방하는 교육의 근간을 기본적으로 부정하고 성소수자 청소년을 위기 상황으로 몰아넣는 큰 문제점을 지니고 있음.
- 이에 대해 2018년 교육부가 구성한 '교육 분야 성희롱·성폭력 근절 자문위원회'는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포괄적 관점의 성교육을 제시할 것을 권고하였음. 그럼에도 교육부에서는 이에 대해 어떠한 개편, 폐지도 하지 않았고 일선 학교에서 현재까지도 성교육표준안에 따른 성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음. 심지어 2019년 9월 제 5·6차 유엔아동권리협약 이행 대한민국 본심의에서 대한민국 교육부는 성교육에 성소수자를 포함할 '계획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답변하기도 함.¹⁴⁾
- 2017년 서울특별시교육청에서 발표한 <학생의 성 권리 인식 및 경험 실태조사> 연구 결과에 의하면 '성적 지향에 대해 고민한 학생들은 전체의 13.3%'인 것으로 나타남. 또한 성소수자에 대한 정보 및 교육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는 전체 학생들 중 33.4%, 여학생의 41.0%, 남학생의 26.1%가 필요하다고 응답함. 구체적인 내용은 '성소수자 차별이나 혐오를 방지하는 인권교육' (80.5%)이었으며 '성적 지향과 정체성 자체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 (58.6%), '성소수자와 관련한 고민 및 문제가 있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 (51.8%)이었음
- 한편으로 각 일선 학교에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이루어져야 할 성교육에 대해 국가가 표준안이란 이름으로 동일한 교육과정을 강요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2016년에는 성교육담당 교사 700여명이 신청했던 온라인 성교육연수가 '성정체성과 성소수자의 이해' 단원이 포함되어 있어 표준안에 맞지 않는다는 교육부의 요구로 갑자기 취소되는 등, 표준안의 이름으로 인권의 관점에서 적극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을 막는 상황들이 발생하고 있음. 따라서 근본적으로는 표준안을 폐지하고 성교육에 대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2) 정책과제

- 현행 교육부의 '국가수준의 학교 성교육 표준안'을 폐지하고 개별 교육현장의 상황에 맞추어 참조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제정
- 인권의 관점에서 성적다양성을 포함한 성교육이 이루어지도록 교과과정을 개정

14) 포괄적 성교육 권리 보장을 위한 네트워크(2019. 11. 13.) "[교육부는 시대착오적 '성교육표준안'을 폐기하고, 국제 기준에 따른 '포괄적 성교육'을 적극 추진하라]"

1) 현황 및 문제점

- 국가 및 지자체는 성소수자의 문화행사, 공익법인의 설립 등 시민이 보장받아야 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지 않고 있음. 그 결과 다음과 같이 성소수자들의 권리가 침해당하는 사건들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음.

국가기관의 성소수자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침해 사례

- 2013년 마포구청의 성소수자차별반대무지개행동에 대해 홍대 앞 걷고싶은거리의 나무무대 사용 신청 거부
- 2014년 서대문구청의 2014년 제15회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 사용 승인 취소
- 2015년 서울지방경찰청 및 서울남대문경찰서의 2015년 제16회 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금지통고
- 2015년 대구중구청의 2015년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해 동성로 야외무대 사용 불허
- 2015년 2015년 대구지방경찰청 및 대구중부경찰서의 제7회 대구퀴어문화축제 퀴어퍼레이드에 대한 옥외집회금지통고
- 2014년 서울시, 국가인권위원회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 2015년 법무부의 비온뒤무지개재단 사단법인 설립 신청 거부
- 2017년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에 대한 동대문구체육관 대관 취소
- 2018년 인천 동구청의 인천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동인천역 북광장 사용 협조 거부
- 2017-2019년 해운대구의 부산퀴어문화축제에 대한 도로점용불허

- 마포구 나무무대 사용신청거부, 서대문구 퀴어문화축제 퍼레이드 장소 승인 취소, 퀴어여성생활체육대회 대관취소에 대해서는 국가인권위원회의 차별시정권고가 이루어짐. 그럼에도 이러한 권고를 무시한 채 계속해서 국가기관 및 지자체에 의한 성소수자 행사 방해가 이루어지고 있음.
- 한편 반성소수자단체에 의해 성소수자 집회를 방해하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에도 경찰은 이에 대해 제대로 된 대처를 하지 않고 있음. 2018년 인천퀴어문화축제, 대구퀴어문화축제 현장에서 반성소수자 단체들에 의해 조직적인 집회방해, 증오범죄가 이루어졌지만 경찰은 이에 대응하지 못하였고 축제 참가자들이 깃발을 모두 내릴 것을 요구하는 반성소수자단체들의 주장을 그대로 조직위에 전달하기도 함.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대구퀴어문화축제에서의 집회방해에 대해 “경찰청이 적법한 집회를 최대한 보장하고 제3자의 집회 방해로 인하여 집회의 자유가 제한되지 않도록 대책을 수립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는 의견을 표명함.¹⁵⁾

2) 정책과제

- 집회시위, 공익법인의 설립, 공공장소 대관 등 시민의 표현/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는 법률의 집행에 있어 국가기관의 자의적 해석 및 성소수자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적 집행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권과 차별에 관한 국정감사 강화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및 관련 법제를 개정하여 혐오에 기반해 성소수자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당하는 일이 발생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침해가 발생했을 시 국가기관이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

15) 국가인권위원회 2019. 5. 24.자 집회의 자유 보호에 대한 의견표명

1) 현황 및 문제점

- LGBT의 권리에 반대하는 대표적인 단체들이 <웰스프링>,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 등이 2009년부터 설립되어 [전환치료]를 목적으로 국회, 국가인권위원회 등 공공건물을 대관하여 인권포럼의 이름으로 행사가 여러 차례 열렸음. 최근에는 트랜스젠더의 성별정정 금지 등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행사들이 역시 국회 등 공공건물에서 개최되었음.

국가 및 공공건물,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 대관 이력

- 2014년 11월 18일, 한국 단체들, 홀리라이프, 선민네트워크,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시민연대가 연합하여, 국회의원 김상민의 승인을 통하여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을 대관한 뒤, “제1회 탈동성애인권포럼 Ex-Gay Human Rights Forum” 을 개최.
- 2015년 3월 19일 경 국가인권위원회 승인으로, 국가인권위원회 부지 내에서 “제2회 탈동성애인권포럼” 개최.
- 2015년 5월 9일 “제3회 탈동성애인권포럼”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 2015년 11월 5일 “동성애 등 독소조항이 포함된 차별금지법 대책 기독교시민연대 포럼”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 2016년 1월28일 “동성애문제대책위원회 세미나: 탈동성애인권운동을 혐오하는 동성애 인권단체들의 이중성 과연 올바른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 2017년 6월2일 “1회 "생명,가정,효(孝)세계대회” 국회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개최
- 2019년 5월2일 “탈 동성애 상담은 금지되어야 하는가” 국회의원회관 제8간담회실에서 개최
- 2019년 2월18일 “성전환수술 없이 성별정정을 허가한 하급심 판례 입법적 대응 세미나” 국회의원회관 제2간담회실에서 개최

- 전환 치료(conversion therapy, reparative therapy)는 ‘탈동성애’, ‘전환’, ‘교정’ 같은 명명으로 반(反)동성애에 대한 편견에 의해 형성된 잘못된 심리치료이며 전환 치료는 아무런 과학적 근거 혹은 효과도 없다고 이미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고 입증되었음.¹⁶⁾ 이러한 종류의 치료는 대부분 성적소수자에 대한 차별과 배제 폭력을 조장하며 위험한 일이며 오히려 건강을 위협 하는 일이며, 특히 청소년의 경우 자살위험을 증대 시킬 수 있어 국제인권기구와 국제보건단체들이 주시하며 국가나 지방정부의 법으로 금지하고 있음
- 2015년 11월 5일 유엔 자유권위원회는 대한민국의 시민적 정치적 권리 전반을 심의한 후 내리는 최종 권고문(concluding observations)을 발표, ‘차별금지’와 ‘성적지향 및 성별정체성을 이유로 한 차별’ 등 한국 성소수자 인권 상황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소위 ‘전환치료’의 선전을 포함한 어떤 종류의 사회적 낙인과 차별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공식적인 형태로 분명하게 명시할 것”, “소위 ‘전환치료’ 행사에 공공건물을 사용하지 못하도록 막을 것”을 권고했음(CCPR/C/KOR/CO/4).

16)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2009) “Appropriate Therapeutic Responses to Sexual Orientation”
<https://www.apa.org/pi/lgbt/resources/therapeutic-response.pdf>

2) 정책과제

- UN 시민적·정치적·권리규약위원회의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의 공공건물 대관 금지 권고 (2015.11) 이행
- 국회 등 공공건물에 대한 대관 규정을 정비해 전환치료 및 성소수자 인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행사들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1) 현황 및 문제점

- 대한민국 헌법은 제20조에서 ‘종교와 정치는 분리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그럼에도 일부 국회의원들은 보수 개신교계 인사들과 결탁하여 이들이 주장하는 성소수자에 대한 인권침해와 차별에 동조하고 심지어 법안까지 발의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
- 2016년 2월 29일 보수 기독교계가 주최 국회 기도회에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영선 비상대책위 의원은 보수 기독교계가 주장하는 차별금지법, 동성애법, 인권 관련법에 대해서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공언함.¹⁷⁾ 또한 2015년부터 여러 차례 국회의원들에 의해 인권침해적인 전환치료(탈동성애) 행사가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되는 일들이 발생함.
- 2019년에는 자유한국당 안상수의원을 비롯한 40인의 의원에 의해 국가인권위원회법에서 ‘성적지향’을 삭제하고 ‘성별을 선천적이고 생래적인 이분법적 성별’로 규정하는 국가인권위원회법 개정안이 발의됨. 대표발의의원인 안상수의원은 국회 정론관에서 보수개신교 인사들과 함께 법안 발의의 필요성에 대한 기자회견을 개최함.¹⁸⁾
- 기독교 교리를 논리의 근거로 들며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 국가인권위원회법 내 성적지향에 따른 차별 명시 부분 개정을 요구하거나, 탈동성애가 인권이라고 주장하는 보수 기독교계 단체들의 행사가 국회 안에서 열릴 수 있도록 국회의원이 대관하거나 주최 및 축사 등으로 참여하는 의정활동은 정교분리의 원칙을 넘어 보수 기독교계의 일원으로 동참하면서 성소수자에 대한 차별 선동 행위에 동참하는 것임. 이는 헌법을 준수할 국회의원으로서 용납되기 어려운 행동임.

2) 정책과제

- 보편적 인권의 가치에 반하는 반인권적, 반민주적인 종교계의 논리를 받아들이는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은 정교분리 원칙에 어긋나므로 헌법 제20조에 따라 국회 및 정당 내 윤리강령에 구체적으로 이를 방지하기 위한 대책이 포함되어야 함.

(끝)

17) 한겨레(2016. 3. 2.) “김무성·박영선, 보수기독교 기도회서 항복선언?”
http://www.hani.co.kr/arti/politics/politics_general/732944.html

18) 에브리뉴스(2019. 11. 19.) “안상수 의원, ‘인권위법 개정안’ 기자회견...인권위, “민주주의 역행” 반대“